

의안번호	2204127
의 퇴 인	민홍철 의원
회 답 일	2024. 10. 11.
추 계 번호	24B3925

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5조제1항 (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) 제2호	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·평가하여야 함 2. 산업단지, 폐광지역, 교통밀집지역, <u>공항주변지역</u>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 ※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공항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집단 포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5조제1항 (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) 제2호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공항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집단 포함(안 제15조제1항)
 -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·평가해야 하는 대상에 “공항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집단”을 추가하는 것임

- 환경부는 현행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배출시설 등 주변 주민을 위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 중으로, 건강영향조사는 ①조사지역 환경실태 조사, ②생체노출 조사, ③건강실태 조사를 실시한 이후 환경·생체노출·건강피해 관련성을 종합검토하는 방식으로 실시됨
- 환경부는 산업단지('09~), 화력발전소('17~), 난개발지역('21~) 등 환경오염취약지역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해 왔고, 2024년 관련 예산은 총 65억 4백만원임
 - 건강영향조사 60억원, 건강영향조사지역 사후관리 4억 5,000만원 및 운영비 5,400만원 (「환경보건법」 제17조에 따른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및 운영비 일부를 제외한 금액)

[표 1]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실시 현황

시기	국가산단	일반산단	발전소	난개발지역	시멘트공장	교통 밀집지역	폐기물 재활용시설
'23	국가산단 9개소 (울산·여수 등)	시범조사	1개소 (여수)	26개소 (수원, 서산 등)	기초조사	기초조사	-
'24	계속	계속	종합평가 (총 5개소)	27개소 (누계 100개소)	본조사 (영월·제천)	본조사 (오산)	기초조사

자료: 환경부

- 개정안에 따라 건강영향조사지역에 공항주변지역을 추가할 경우 조사 지역 및 대상의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공항주변지역 중 건강영향조사지역에 포함될 범위를 특정할 수 없고, 공항주변지역에 특화된 구체적인 건강영향조사 계획이 없어 합리적으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
- 참고로, 서울특별시에서는 2014년 연구용역을 통해 「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건강실태조사」를 실시한 바 있는데, 사업비로 3억 6,300만원이 소요되었음
 - 사 업 명: 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건강실태조사
 - 대상지역: 소음피해지역(양천구, 구로구)
 - ※ 고척1~2동, 신월1~4동, 신월6~7동, 신정3동, 화곡6동

- 사업기간: 2014. 2월~12월
- 사 업 비: 362,780천원(시비 100%)
- 연구기관: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(주영수 교수 외)
- 조사인원
 - 본 조사: 지역주민 3,531명
 - 초등학교 설문조사: 총 2,220명(학생 1,207명, 학부모 1,013명)
 - ※ 불성실 응답자 제외
- 주요 내용
 - 소음피해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 선정 및 설문조사
 - 정신건강 및 임상검사 실시: 청력검사 및 심혈관계 질환, 어린이 학습장애 검사 등)

※ 상세내역은 [참고자료] 서남권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참고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박인재	배아형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인재	02-6788-4650	powerreset@nabo.go.kr

[참고자료] 서남권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¹⁾

□ 사업목적

- 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건강영향과 실태를 파악하여 제도개선 등 중앙정부에 대책마련을 건의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.

□ 관련근거

- 「환경보건법」 제15조(환경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등)

□ 사업개요

- 사 업 명: 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건강실태조사
- 대상지역: 소음피해지역(양천구, 구로구)
 - － 고척1~2동, 신월1~4동, 신월6~7동, 신정3동, 화곡6동
- 사업기간: 2014. 2월~12월
- 사 업 비: 362,780천원(시비 100%)
- 연구기관: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(주영수 교수 외)
- 조사인원
 - － 본 조사: 지역주민 3,531명
 - － 초등학교 설문조사: 총 2,220명(학생 1,207명, 학부모 1,013명)
- ※ 불성실 응답자 제외

□ 주요연구내용

- 지역 개황현황 및 국·내외 사례·통계 조사
- 소음피해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 선정 및 설문조사
- 정신건강 및 임상검사 실시: 청력검사 및 심혈관계 질환, 어린이 학습장애 검사 등)
- 건강실태조사 종합평가 및 문제점 등 개선방안 제시

1) 서울특별시 제출자료 및 홈페이지 참고